

수시공시- 투자신탁 규약 변경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,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대상펀드: 세이 수억마련 증권 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사유: 일부 조항 기재내용 오류에 따른 자구 수정
3. 변경내역: 보수 인출

현행	변경
제39 조(보수)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 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생략	제39 조(보수)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 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(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 보수 인출에 한한다) ③ 생략

4. 기 타: 변경 후 규약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